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8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홍배 · 김한규 · 민병덕
이정현 · 김상욱 · 한병도
윤준병 · 박지원 · 정진욱
박정현 · 한민수 · 안호영
김남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

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4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의 제목 중 “賃貸等”을 “賃貸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회사(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장부가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5분의 1(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것

나. 회사가 양도 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를 보유하게 될 것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 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자
회사 주식 양도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74條(營業讓渡, 讓受, 賃貸等)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第374條(營業讓渡, 讓受, 賃貸等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자회사(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 <u>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장부가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5분의 1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것</u> <u>나. 회사가 양도 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를 보유하게 될 것</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② (생략) <u><신설></u>	

	<u>자회사 주식 양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공시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u>
--	--